

責任保險契約에서의 被害者의 地位

梁 承 圭*

一. 머리말

오늘날 人口의 증가와 기계문명의 발달은 편연적으로 갖가지 危險 — 즉 交通事故, 가스폭발, 火災 등 크고 작은 事故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막대한 人命과 財產의 被害 — 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科學文明의 발달과 人口의 증가에 따른 社會構造의 복잡화는 社會的 危險을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증대시키고 그로 인한 事故 뒤에는 그 事故로 말미암아 被害를 입은 者에게 어떻게 補償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따른다. 責任保險은 이러한 事故에 責任이 있는 者가 被害者에게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게 되는 경우 그 損害賠償責任을 保險者에게 돌린 특수한 損害保險이다.

責任保險은 역사적으로 보면 資本主義經濟의 발달과 더불어 企業者의 責任이 엄격하게 됨에 따라 비교적 뒤늦게 발전한 것이다. 단조로운 經濟社會에서 產業社會로 넘어오면서 「過失이 없으면 責任이 없다」는 이론과 過失責任主義의 法原理로서는 產業災害로 인한 被害者의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어 社會의 正義와 安全을 폐할 수 있게 되었고, 企業者の無過失責任 내지는 嚴格責任에 의하여 被害者の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독일에서 責任保險이 발전한 것은 1871년의 「鐵道와 鐵山 등의 事業經營으로 인한 死亡과 身體傷害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法律」이론과 責任法(Rechts-haftspflichtgesetz)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¹⁾ 영국의 1880년의 使用者責任法(Employer's Liability Act)은 使用者賠償責任保險의 발전을 촉진시켰다.⁽²⁾ 그리고 최근 경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科學技術과 道路交通의 증가와 더불어 責任保險은 現은 時日 안에 가장 중요한 保險分野의 하나로서 現代保險의 총아(Wunderkind)가 되고 있다.⁽³⁾

責任保險契約은 保險者가 保險期間 중의 事故로 말미암아 第3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경우에 保險者가 이를 補償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損害保險契約이다(商 719조). 責任保險에 있어서 保險者は 어떤 特정한 目的物에 대하여 保險事故로 保險者가 직접 입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教授

(1) Brück-Möller-Johannsen,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8 Aufl., 1970, S. 37.

(2) William L. Prosser, The Law of Torts, 4 ed., 1971, p. 542.

(3) 鄭熙喆, 全訂商法要論(下), 128면. 우리나라에 사도 1963의 產業災害補償保險法, 自動車損害賠償保險法에 의한 「產業災害補償保險」,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1969의 原子力損害賠償法에 의한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 1973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등약관 화재보험」 등이 強制責任保險으로서 영위되고, 1964 이래 一般賠償責任保險 등 각종 任意責任保險이 영위되고 있으며, 앞으로 責任保險의 效用性은 나날이 높아갈 것이다.

은 財產上의 損害를 補償하는 것이 아니고, 被保險者가 他人의 死亡이나 傷害(人的損害) 또는 物件의 滅失・毀損(物的損害)에 대하여 法律上 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損害, 이른바 間接損害를 補償할 것을 目적으로 하는 점에서 一般損害保險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⁴⁾ 그리하여 責任保險契約의 存在는 保險契約者(被保險者) 이외의 第3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뜻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責任保險保護(Haftpflichtversicherungsschutz)의 存在에 의한 일반적 이익은 被保險者の 債權者에게 돌아가게 된다.⁽⁵⁾ 여기에서 責任保險契約에 있어서는 被害者인 第3者가 어떠한 地位를 차지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責任保險의 機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二. 責任保險의 機能

保險制度는 같은 危險에 놓여 있는 다수의 經濟主體가 인류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危險을 轉嫁하고 分散시킴으로써 경제적 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制度이다. 責任保險도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남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될 危險이 있는 사람들이 그 危險을 分산시키 保險者에게 그 責任을 돌림으로써 賠償責任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責任保險은 그 保險에 든 被保險者の 보호가 제1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加害者の 賠償資力의 확보에 의한 被害者の 보호에도 그 이념을 두고 있다. 責任保險은 그 保險에의 가입이 法律上 강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強制責任保險과 任意責任保險으로 나누어 있는데, 전자는 특히 被害者の 보호를 第一義的인 기능으로 하고, 후자는 被保險者 자신의 보호가 第一義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強制責任保險은 가령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에서 보는 것처럼 自動車事故로 인한 被害者の 보호라는 社會의 인 요청에 따라 自動車의 保有者에게 그 保險加入를 강제하고 있으나, 이 保險은 단순히 交通事故로 인한 被害者の 보호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自動車의 保有者와 運轉者の 보호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⁶⁾ 그리하여 責任保險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被保險者에게는 第3者에 대한 賠償責任을 保險者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自衛手段이 되는 동시에 被害者인 第3者에게는 損害賠償額의 확보로써 최소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社會의 機能을 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 이에 따라 責任保險은 加害者와 被害者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被保險者の 보호

責任保險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使用者の 賠償責任이 엄격하여집에 따라 그러한 賠償責任을 지는 使用者들이 危險을 分산시키 保險者에게 그 責任을 물리려는 데에서부터 발전하

(4) 摘稿, 責任保險契約의 性質과 保險事故, 써스티스 11-1(1973), 93면 이하 참조.

(5) Hans Möller u.a. Die Rechte Dritte gegen den Versicherer, ZVerWiss 1970, S. 31.

(6) 摘稿, 自動車強制責任保險의 理論과 實際, 「서울대 法學」특별호 2권(1972), 161면 참조.

(7) 徐燉莊, 第二全訂 商法講義[下卷], 279면.

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保險者는 使用者가 雇傭關係에서 생긴 被用者の 傷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집으로써 입은 損害의 補償을 引受한 이른바 使用者賠償責任保險(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에서부터 시작하여⁽⁸⁾ 被保險者の 過失責任을 保險者에게 둘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責任保險의 발전 초기에는 保險契約者が 자신의 過失의 결과에 대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契約이 普良한 社會秩序(public policy)에 어긋나 無效로 되는 것이 아니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責任保險은 職業의인 訴訟專門家로서 진정한被告를 대처하도록 마련하고, 실제의 不法行爲者를 그의 行爲에 대한 責任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反社會的 行爲(anti-social conduct)를 부추기고 他人의 權利에 대하여 조심성(vigilance)을 덜게 하는 不法의in 형태의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제로 심각한 결과가 생겨나지 않음이 명백해짐으로써 責任保險에 대한 반대는 사라졌고, 責任保險契約의 有效性은 그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물론⁽⁹⁾ 오늘날 각 분야에서 責任保險의 效用性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責任保險契約에 있어서 保險者는 被保險者が 保險期間 중의 事故로 인하여 第3者에게 賠償할 責任을 진 경우에 이를 補償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商 719조) 責任保險은 바로 被保險者の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¹⁰⁾ 즉 責任保險에 있어서 保險者는 被保險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면제해 주고 또 第3者的 근거 있는 또는 근거 없는 請求에 대하여 被保險者の 權利保護(Rechtsschutz)를 꾀하게 되는 것이다.⁽¹¹⁾ 責任保險은 被保險者が 保險事故로 말미암아 第3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집으로써 생기는 財產上의 損害를 補償받기 위하여 保險에 드는 것이므로 被保險者の 權利保護機能(Rechtsschutzfunktion)을 도와시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¹²⁾

責任保險契約關係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하는 것은 被保險者が 第3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것을 진체로 한다. 여기서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와의 責任保險契約에 따른 法律關係를 責任保險關係(Haftpflichtversicherungsverhältnis)라고 하고, 加害者인 被保險者와 被害者인 第3者 사이에는 不法行爲 내지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關係가 성립하는데, 이것을 責任關係(Haftpflichtverhältnis)라 한다. 責任保險契約關係에서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이 인정되지 않는 法制에서는 責任關係와 責任保險關係(補償關係)는 서로 독립되어 被保險者が 被害者에게 責任을 지는 경우에는 責任訴訟

(8) Vance-Anderson, Law of Insurance, 3d., 1951, p. 1000.

(9) Prosser, op. cit., p. 543.

(10) Georg Büchner, Zur Theorie der obligatorischen Haftpflichtversicherungen, 1970, S. 3.

(11)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1 Aufl., 1977, SS. 680-1. Anm. 1 zu §149.

(12) Vgl. Büchner, a.a.O., S. 5. 독일에서는 責任保險의 法的性質을 損害保險이라고 보는 說이 通說이나 權利保護保險(Rechtsschutzv.)이라고 보는 說(Georgii)과 損害保險과 權利保護保險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說(Ehrenberg)이 있는데, 責任保險이 損害保險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被保險者の 權利保護機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Haftpflichtprozeß)에 따르고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責任을 지는 경우에는 補償訴訟(Deckungsprozeß)에 따르는 分離主義(Trennungsprinzip)가 지배한다.⁽¹³⁾ 그러나 責任保險契約의 被保險者가 保險事故로 말미암아 第3者에 대한 賠償責任이 확정되면 바로 保險者の 補償責任을 拘束하게 되어⁽¹⁴⁾ 양자를 전혀 분리하여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保險者は 被保險者와 被害者 사이의 責任訴訟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여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따라 責任保險契約에는 保險者の 防禦義務(abwehrverpflichtung)를 明示하여 두고 있다.⁽¹⁵⁾ 즉, 責任保險契約에는 일반적으로 保險會社는 被保險者에 대한 訴가 비록 근거없고 詐欺의 것이라 하더라도 身體의 傷害 또는 物件의 損傷에 대한 주장을 防禦하여야 한다는 條項을 담고 있다.⁽¹⁶⁾

우리나라의 自動車綜合保險普通保險契約 제 4 조는 「被保險者가 對人事故로 損害賠償의請求를 받은 때에 우리회사는 被害者와의 折衷, 合意, 仲裁 또는 訴訟의 節次를 도와드리며 被保險者の 요청에 따라 이를 代行할 수 있읍니다」라고 정하고, 또 배상책임보험약관 제13조1항은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被保險者の 청구에 의하여, 후자는 保險者が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다 같이 被保險者를 대신하여 직접 被害者와 交渉을 벌여 責任關係의 확정을 지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保險者와 被保險者の 이익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責任의 확정에 관여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被保險者の 權利保護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保險者は 被保險者를 위하여 支給義務가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 防禦義務에 관한 條項은 적용된다고 둘러하여야 할 것이다.⁽¹⁷⁾

責任保險者は 被保險者の 협조를 얻어 그 防禦義務를 수행할 수 있으며,⁽¹⁸⁾ 保險者로서 기울일 수 있는 通常의 注意(ordinary care)로써 그義務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¹⁹⁾ 그리고 責任保險者は 거의 그 발전 초기부터 被保險者の 損害 또는 責任 자체에 대한 補償 이상의 것을 引受하기 시작하였다. 責任保險契約의 제 1 차례인 목적의 하나는 언제나 訴訟費用과 訴訟上의 불편에 대하여 被保險者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두고 있다. 第3者的 請求에 대한 調査, 被害者와의 和解, 供託金의 요구되는 경우 그것의 提供, 被保險者에 대하여 제기된 訴의 防禦, 辯護士費用과 기타 필요한 費用의 支給을 포함시키고, 또 오늘날에는 흔

(13) Prölss-Martin, a.a.O., S. 686 Anm. 5A zu §149.

(14) Ibid., S. 687.

(15) Bruck-Möller-Johannsen, a.a.O., S. 65. §3 II Ziff. 1. Abs. 1 AHB; §10 Ziff. 1 AKB.

(16) Robert E. Keeton, Basic Text on Insurance Law, 1971, p. 142.

(17) Ibid.

(18) 배상책임보험약관 제13조 1항 후단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해결하는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여 被保險者の 協助義務를 明示하고 있다.

(19) Keeton, p. 477.

이 被害者の 應急治療費의 支給은 尤其 被保險者の 賠償責任이 없고, 또 아무런 賠償請求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모든 費用에 관하여는 保險者の 責任으로서 인정하고 있다.⁽²⁰⁾ 商法 제720조는 「被保險者が 第3者의 請求를 방어하기 위하여支出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必要費用, 擔保의 提供 또는 供託의 提供 등은 保險者の 指示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金額에 損害額을 加算한 金額이 保險金額을 초과하는 때에도 保險者が 이를 負擔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責任保險契約에서 정한 保險事故⁽²¹⁾가 생긴 경우에 保險者は 被保險者の 이익보호를 위하여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工場主, 自動車運轉者, 가스事業者 등 각종 事業에 종사하는 者가 그 事故發生의 蓋然率에 따라 적은 保險料로써 企業上の 危險에 따르는 賠償責任을 保險者에게 돌려으로써 企業經營의 안정을 꾸밀 수 있는 것이다.

2. 被害者の 보호

不法行為制度의 理想은 損害의 公平·妥當한 分配에 있다. 그러나 損害賠償을 被害者와 加害者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삼는데 그친다면 實제에 있어서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²²⁾ 가령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와 같이 加害者の 責任을 아무리 일격하게 한다 하더라도 加害者が 現실적으로 賠償金을 支給할 資力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²³⁾ 그리하여 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加害者の 責任을 擔保하는 수단이 장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責任保險은 그러한 制度의 하나로서 責任保險保護의 구체적인 이익은 被保險者の 不法行為債權者(Deliktsgläubiger)가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責任保險은 원래 企業主의 責任이 加重됨에 따라 企業主들이 그 危險轉嫁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任意責任保險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社會構造가 복잡해지고 機械文明이 발달함으로써 각종 災害事故가 늘어남에 따라 그것은 加害者와 被害者 사이의 私法的인 損害賠償關係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중대한 社회적인 문제로 등장되었다. 그리하여 加害者の 무거운 責任의 부담을 분산하고 그 賠償資力を 保險에 의하여 보충함으로써 각종 危險에 부딪치고 있는 일반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法律이 責任保險에의 加入義務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²⁵⁾

우리나라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1조는 「이 法은 自動車의 運行으로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가 死傷된 경우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을 보장하는 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被害者の 보

(20) Prosser, pp.542-3.

(21) 責任保險의 保險事故에 대하여는 損害事故說, 賠償請求說, 責任負擔說 등으로 간ter 있으나 保險者の 責任의 原인이 되는 事故가 발생한 때에 保險事故가 발생하였다고 認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拙稿, 전개, 責任保險契約의 性質과 保險事故 참조).

(22) 郭潤直, 全訂版 債權各論, 584면.

(23) 徐燦珪, 전개서, 279면.

(24) Hans Möller u.a. a.a.O., S. 32.

(25) 徐燦珪, 전개서, 280면.

호』를 도모하고 自動車運送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被害者의 보호를 위한 制度的 保障으로서 自動車의 保有者에게 일정한 責任限度額에 따른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에의 加入을 義務化하고 있다.⁽²⁶⁾ 이것은 바로 責任保險의 기능에 따라 交通事故로 인한 被害者의 보호를 그 目的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와 같이 強制責任保險은 加害者の 損害賠償資力의 확보에 의한 被害者의 보호를 그 第一義的인 사명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任意責任保險에 있어서도 同樣적으로는 被害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商法 제724조에서 保險事故가 생긴 경우에 第3者가 그 損害賠償을 받기 전에는 保險金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被保險者에게 支給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保險契約者에게 通知를 하거나 保險契約者的 청구가 있으면 保險者가 第3者에게 保險金額을 직접 支給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그 보기이다. 다시 말하면 責任保險에 있어서 被害者의 보호는 任意責任保險이든 強制責任保險이든 다 같이 중요한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기능적으로 볼 때에는 責任保險은 被害者를 위한 保險, 즉 他人을 위한 保險(商 639조 참조)의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²⁸⁾ 過失있는 加害者が 責任保險에 들었을 때에는 被害者は 그의 損害에 대한 賠償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²⁹⁾ 責任保險이 被害者에게 주는 이익은 충 것이다.

三. 被害者の 地位

1. 責任保險契約과 被害者와의 관계

責任保險契約은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이루어져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保險期間 중의 事故로 인하여 第3者에게 賠償할 責任을 진 경우에 이를 补償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損害保險契約이다(商 719조). 그러므로 責任保險契約에서는 被害者の 존재를 그 전제로 하고 있으나, 保險金請求權은 被保險者가 가지고, 被害者로서는 그 契約은 他人 사이의 契約(res inter alios acta)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責任保險은 被保險者를 위한 保險으로서 被害者에게 保險金請求權을 인정하는 他人을 위한 保險(Versicherung für fremde Rechnung)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본래 責任保險保護는 오로지 被保險者の 이익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³⁰⁾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保險關係와 責任關係를 분리하고 있는 法制下에서는 被害者는 保險者에 대해서는 직접 어떠한 權利도 가지지 아니하고

(26) 自賠法 제 5조; 다만 保有者가 일정한 金額을 供託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同 6조), 이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5조, 原子力損害賠償法 제 7조도 責任保險의 加入을 강제하고 있다.

(27) Büchner, a.a.O., S.33.

(28) Eike v. Hippel, Schadensausgleich bei Verkehrsunfällen Haftungersetzung durch Versicherungsschutz, 1968, S. 46.

(29) Jerry S. Rosenbloom, Automobile Liability Claims, 1968, p. 3.

(30) Hans Möller u.a. a.a.O., S. 37.

다만 加害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不法行爲를 원인으로 被害者가 加害者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하는 데는 그 餘次가 까다롭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³¹⁾ 責任保險契約에 있어서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第3者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財產上の 損害를 補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적으로는 責任保險者의 保險金支給은 被害者인 第3者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으로⁽³²⁾ 被害者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保險者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責任保險의 발전에 따라 被害者가 保險者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관념은 점점 사라졌고, 現行法은 원칙적으로 被害者の 地位를 보장·강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³⁾ 이것은 責任保險의 被害者保護機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責任保險에 있어서는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어떠한 형태이든 被害者에게 保險者의 保險金支給과 연관을 맺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 責任保險契約에서 被害第3者라 함은 保險契約에서 정한 事故로 被保險者에게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는 者로서 본래의 被害者이거나 그의 相續人이거나 상관이 없다.⁽³⁴⁾ 각 나라의 法制에서는 責任保險契約에서 被害者인 第3者에게 일정한 法的地位를 인정하여 궁극적으로는 保險金의 支給에 의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立法例와 責任保險의 態樣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保險事故의 發生과 被害者의 地位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の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다(商 659조 1항). 이것은 責任保險契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責任保險契約에서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が 故意로 일으킨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免責事由로 하여 중대한 過失로 인한 損害의 발생에 대하여는 保險者가 그 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⁵⁾ 그러므로 責任保險의 경우에도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の 故意로 被害者에 대한 損害가 생긴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金支給責任을 지지 아니하므로 被害者는 그 責任保險契約에 의하여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故意(Vorsatz)라 함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が 그러한 事故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³⁶⁾

責任保險契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被保險者の 被害者에 대한 法律上の 損害賠償責任을擔保하고 있는 데서 保險契約者 등의 故意로 인한 保險事故의 발생의 경우에 保險者の 免責을 인정하는 것이 被害第3者를 고려하여 옳은 것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나, 일반적인

(31) v. Hippel, S. 43.

(32) Albert Ehrenzweig, Deutsches (Österreichisches) Versicherungsvertragsrecht, 1952, S. 374.

(33) Möller u.a. S. 37.

(34) Bruck-Möller-Johannsen, a.a.O., S. 112 Anm. 78.

(35) 배상책임보험약관 4조 1호, 自動車綜合保險契約 6조 1항 1호, 독일保險契約法 제152조 참조.

(36) Stiefel-Wussow-Hofmann, Kraftfahrtversicherung, 10 Aufl., 1977, S. 437 Anm. 10.

責任保險에서 이를 肯定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保險者가 第3者와의 관계에서 保險契約者에 대한 것보다 더 큰 責任을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³⁷⁾ 自賠法 제3조단서는 自動車의 運行者가 被害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을뿐 保險者의 免責事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한 바가 없다. 그리하여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에서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故意로 인한 경우에도 保險者의 保險金支給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被害者の 보호라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 등의 故意로 인한 경우에는 責任保險에서도 保險者가 引受한 危險 밖에 있는 것으로 하고,⁽³⁸⁾ 被害者の 보호를 위하여는 保有不眞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한 被害者の 경우와 같이 일정한 補償基金에서 補償하도록 하는 것이 끊을 것이다.⁽³⁹⁾ 다시 말하면 責任保險에 의하여 被保險者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損害賠償責任을 保險者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⁴⁰⁾

또 保險者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契約을 맺을 때에 告知義務를 違反하거나(商651조) 危險變更・增加의 通知義務 등의 違反(商652조, 653조)이 있을 때에는 保險者는 일정한期間 안에 保險事故의 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그 契約을 解止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保險者가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保險者의 保險金支給責任도 없게 된다(商655조 참조). 이와 같이 保險者가 保險金支給責任을 치지 않는 事由가 있은 때에는 被害者は 加害者가 賠償責任을 치는 경우에도 責任保險契約上의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被害者에 대한 保險金의 支給

商法은 責任保險契約의 경우에는 被保險者が 第3者에 대하여 辨濟, 承認, 和解 또는 裁判으로 인하여 債務가 확정된 때에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保險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商723조 1항,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保險者로 하여금 保險事故가 발생하여 그 債務가 확정되면 신속히 保險金額을 支給하도록 함으로써 被保險者の 損害를 補償하여 保險의 效用性을 높이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責任保險에 있어서는 被保險者는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履行을 하지 아니한 한 적법적인 損害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被保險者에 대하여 保險金을 支給한 후에 被保險者가 被害者에게 損害賠償金을 支給하지 아니함으로써 被害者の 보호에 단절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商法 제724조1항은 「保險者는 被保險者が 責任을 질 事故로 인하여 생길 損害에 대하여 第3者が 賠償을 받기 전에는 保險金

(37) Möller u.a. SS. 32-3.

(38) Ibid. BGH 25. XI. 1953 BGHZ Bd. 11, S. 120.

(39) 自賠法 30조의 2. 摘稿, 전개 「서울대 法學」, 185면 참조.

(40) Vgl. v. Hippel, a.a.O., S. 26.

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被保險者에게 支給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被害者인 第3者의 賠償請求를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⁴¹⁾ 保險者는 被害者에 대한 被害賠償이 이루어진 후에만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하도록 한 것으로 被保險者が 그 損害賠償責任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함으로써 被害者가 그 賠償金을 확보할 수 없었을 때에는 保險者가 그에 대한 責任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商法은 責任保險者가 支給하는 保險金額이 被害者의 賠償請求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하도록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保險者는 保險契約者에게 通知를 하거나 保險契約者の 청구가 있는 때에는 第3者에게 保險金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支給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商724조 2항). 責任保險契約에서 被害者는 진혀 第3者이지만 責任保險者의 保險金支給은 결국 被害者에게 귀속되고, 被保險者에 대한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는 保險者에 대해서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保險者가 그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保險者가 被保險者에 대한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에 관하여 被保險者를 대신하여 被害者와 직접 交渉하여 和解, 承認 또는 判決에 의하여 그 損害賠償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保險契約者에게 通知하고 保險金額을 직접 被害者에게 支給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그리고 保險者가 保險金을 被害者에게 支給한 때에는 被保險者は 그 한도에서 被害者에 대한 責任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保險契約者の 청구가 있으면 保險者는 被害者에게 保險金을 직접 支給하여야 하는 것이고, 保險契約者가 被害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하도록 請求하는 것은 保險契約者の 免責請求(Befreiungsanspruch)⁽⁴³⁾라 할 수 있고, 이것은 被保險者の 權利保護를 위해서도 이바지하는 것이다.⁽⁴⁴⁾

우리 商法上 保管者の 責任保險(商72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一般責任保險關係에서 被害第3者에게 保險者에 대한 保險金의 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保險者は 保險契約者에게 通知하거나 그 請求를 받아 支給할 수 있을 뿐이나,⁽⁴⁵⁾ 被害者로서 保險者에 대한 保險金請求의 길을 막는 것은 아니다. 즉 被害者는 加害者인 被保險者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가진 債權者로서 被保險者の 保險金債權에 대하여 押留 또는 轉付命令을 받아 被保險者를 代位하여 스스로 保險者에게 支給請求를 할 수 있는 것이다(民訴561조, 564조).

(41) 孫珠瓚, 改訂 商法 (下), 123면.

(42) 獨일保險契約法 제156조 2항 참조.

(43) Werne Wussow, Allgemeine Versicherungsbedingungen für Haftpflichtversicherung, 6 Auf., 1970, S. 275 Anm. 5.

(44) Prölss-Martin, S. 681.

(45)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5조는 ①被保險者が 被害者에게 지는 損害賠償額에 관하여 判決의 雖定, 裁判上の 和解, 仲裁 또는 書面에 의한 합意가 성립한 때, ②被害人が 被保險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被保險者에게 書面으로 승낙하였을 때, ③被保險者の 死亡, 生사불명 또는 破産 등으로 被害者가 損害賠償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保險者가 被害者에게 직접 保險金을 支給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保險契約者の 免責請求權이 支給請求權으로 바뀌게 된다고 할 수 있다.⁽⁴⁶⁾

독일保險契約法 제156조1항은 「保險關係에서 생겨난 補償債權에 대한 處分은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 強制執行 또는 押留에 의한 處分도 法律行爲에 의한 處分과 동일하게 다룬다」라고 정하여 法律上 保險契約者(被保險者)에 의한 保險金請求權에 대한 處分을 禁止하고 있다. 여기서 處分(Verfügung)이라 함은 그 補償債權의 變更, 讓渡, 托기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行爲이고, 이러한 處分은 被害者에 대한 관계에서는 無效가 된다.⁽⁴⁷⁾ 우리 商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⁴⁸⁾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서 被保險者의 保險金請求權에 대한 處分을 인정할 것이라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責任保險의 被害者保護機能에서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끌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被保險者가 破産한 경우에 保險者에 대한 保險金請求權에 관하여 被害者の 別除權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⁴⁹⁾

4. 被害者의 保險金直接請求權

(가) 의의 본래 責任保險은 第3者에 대한 被保險者の 不法行爲責任으로 생긴 損害에 대하여 被保險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⁵⁰⁾ 責任保險契約에서 被害者は 第3者로서 保險者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權利도 가지지 않는 것은 契約法의 一般原則上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責任保險契約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被害者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므로 保險事故로 인한 被保險者の 損害賠償責任이 생겼을 때에 被害者が 保險者에 대하여 직접 保險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被害者の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法은 責任保險契約에서 保險事故가 생길 때에 被害者에게 保險金請求權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아른바 保險者에 대한 被害者の 直接請求權(Direktanspruch)이다.

(나) 直接請求權의 實際 商法 제725조는 「貸借人 기타 他人의 物件을 보관하는 자가 그 支給할 損害賠償을 위하여 그 物件을 保險에 불인 경우에는 그 物件의 所有者는 保險者에 대하여 직접 그 損害의 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任意責任保險에 있어서는 保管者の 責任保險의 경우에만 被害者인 物件所有者的 保險金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을 비롯한 強制責任保險法에서는 한결같이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을 法定하고 있다.⁽⁵¹⁾

독일保險契約法은 제157조에 의하여 被害者は 保險契約者が 破産한 경우에 그 損害補償

(46) Prölss-Martin, S. 718; Bruck-Möller-Johannsen, S. 86.

(47) Prölss-Martin, S. 715 Anm. 2.

(48) 다만 產災保險法 제16조는 保險金請求權의 讓渡 또는 押留를 禁止하고, 自賠法 제15조는 押留만을 禁止하고 또 原子力損害賠償法 제8조3항은 讓渡, 擔保의 提供 및 押留를 禁止하고 있다.

(49) 독일保險契約法 제157조는 이를 明文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原子力損害賠償法 제8조 1항은 被害者の 保險金請求權에 다른 債權보다 優先辨濟權을 인정하고 있다.

(50) Keeton, op. cit., p. 232.

(51) 自賠法 12조, 產災保險法 12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9조, 原子力損害賠償法 8조.

請求權에 대하여 別除辨濟를 청구할 수 있을 罷 任意責任保險에서 被害者 的 保險金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⁵²⁾ 그러나 1965. 4. 5의 自動車保有者를 위한 義務保險法(Gesetz über die Pflichtversicherung für Kraftfahrzeughalter), 이른바 義務保險法(Pflichtversicherungsgesetz) 제 3조 1호는 「第3者は 保險關係에 따른 保險者 的 紙付義務의 權位 안에서 또 紙付義務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 4호 내지 제 6호의 權位에서 保險者에 대하여 損害補償請求를 할 수 있다. 保險者는 現金으로(in Geld) 損害補償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2호는 「第3者が 제 1호에 따라 保險者에 대하여 損害補償請求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保險者와 賠償義務 있는 保險契約者は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自動車義務(強制)責任保險의 경우에는 保險者에 대한 被害者 的 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고,⁽⁵³⁾ 이것은 獨일保險契約法 제158조 k에 의하여 任意責任保險의 경우에까지 그 義務保險의 規定의 적용을 확장하고 있다.⁽⁵⁴⁾

이에 대하여 프랑스保險契約法 제53조는 「保險者는 被害第3者が 保險契約者の 責任을 생기게 한 損害行為의 金錢的 結果로 支給하여야 할 补償金의 限度에서 만족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第3者 이외의 者에게 支給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責任保險契約에서 被害者 的 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⁵⁵⁾ 또 스위스保險契約法 제60조 1항은 被害者는 保險者에 대한 損害補償請求權에 대하여 質權(Pfandrecht)을 가지고 保險者는 被害者에게 직접 保險金을 支給할 수 있음을 정하여 被害者 的 直接請求權을 허용하고 있다.⁽⁵⁶⁾

또 英美法에서는 責任保險에서 第3者에게는 保險者에 대한 訴權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⁵⁷⁾ 責任保險約款에는 보통 被保險者가 支給할 損害賠償額이 判決에 의하여 또는 被保險者, 被害者(claimant) 및 保險會社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는 保險會社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⁵⁸⁾ 그러나 英國의 1972년의 道路交通法(Road Traffic Act) 제149조는 保險者에 대한 第3者의 直接請求權(direct remedy)

(52) Ehrenzweig, S. 374.

(53) Vgl. Prölls-Martin, S. 762f. 오자리의 1967. 6. 23의 自動車法(Kraftfahrgesetz) 제63조 1항도 被害第3者は 自動車責任保險 또는 損害保險에 의하여 被保險者에게 생긴 損害補償請求權에 관하여 保險契約의 權位 안에서 保險者에 대한 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 (Wahle-Grub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1970, S. 262f.).

(54) Prölls-Martin, S. 755.

(55) Picard et Besson, *Les Assurances Terrestres en Droit Français*, 2ed., 1964. p. 525f.

(56) Schw. VVG. Art. 60 (1) An dem Ersatzansprache, der dem Versicherungsnehmer aus der Versicherung gegen die Folgen gesetzlicher Haftpflicht zusteht, besitzt der geschädigte Dritte im Umfange seiner Schadenersatzforderung Pfandrecht. Der Versicherer ist berechtigt, die Ersatzleistung direkt an den geschädigten Dritten auszurichten.

(57) David L. Bickelhaupt, General Insurance, 9d., p. 584.; MacGillivray & Parkington, Insurance Law, 6d., 1975, p. 934 §2246.

(58) Keeton, op. cit., p. 534.

을 인정하고 있다.⁽⁵⁹⁾

(다) 直接請求權의 근거 責任保險契約이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이루어지는 債權契約으로서 被害者は 第3者에 지나지 않는데, 被害者が 保險者에 대하여 직접 保險金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說이 있으나, 보통 ① 責任保險의 본래의 性格에 두는 說, ② 法規定의 效果라고 풀이하는 說, ③ 契約當事者の 意思表示에 의한 效果라고 풀이하는 說과 크게 나뉘고 있다.⁽⁶⁰⁾ 第1說은 責任保險은 본래 被害者の 보호를 위한 것으로 加害者の 보호는 被害者の 단족의 反射的 效果에 지나지 않으며, 被害者は 責任保險에서의 第1次의 被保險者라고 풀이하는 데서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의 근거를 찾고, 第2說은 責任保險에서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이 인정되는 것은 法의 规定에 의한 效果라고 풀이한다. 그리고 第3說은 契約當事者の 意思表示에서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의 근거를 찾아 被保險者에게 생긴 契約上의 效果로서의 保險金을 保險者는 被害者에 대하여 支給할 義務를 지는데, 이것은 被保險者が 미리 責任免脫을 위하여 條件附의 權利의 移轉을 약속하고 保險者가 이를 承認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⁶¹⁾

責任保險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능적으로는 被害者를 위한 保險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責任保險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第3者의 利益保護를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⁶²⁾ 그러나 責任保險契約關係에서 被害者は 第3者로서 직접 保險者에 대한請求權은 가지지 아니하므로 被害者が 비록 被保險者를 상대로 損害賠償額의 確定判決을 얻은 후에 保險者에게 그 金額의 支給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保險者는 被保險者에 대해서는 支給義務를 진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⁶³⁾이 一般契約法의 原理라 할 수 있으므로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의 근거를 責任保險契約의 본래의 성격에서 찾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責任保險契約에서 被保險者는 뜻하지 아니한 事故의 발생으로 第3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責任을 保險者에게 돌입으로써 經濟的 負擔을 덜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지 바로 그 條件附 權利를 被害者에게 移轉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責任保險契約에서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은 法의 特別規定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被害者保護라는 政策的 觀點에서 法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⁶⁴⁾ 이것은 保險關係와 責任關係를 분리하여 고려

(59) MacGillivray & Parkington, *ibid.*, §2247.

(60) 徐燉廷,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上의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에 관한 약간의 問題, 「維民洪旼基先生 華甲紀念論文集 法學의 諸問題」 170면; 田邊康平, 被害者の直接請求權, 損害保險雙書② 自動車保險 198면 이하.

(61) 西島梅治, 保險法, 310면.

(62) Keeton, *op. cit.*, p. 232.

(63) *Ibid.*, p. 233.

(64) 徐燉廷, 전개論文, 172면.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특히 被害者保護라는 사회적 요청에 따른 強制責任保險에서는 法律에 의하여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는 데서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法에 의하여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責任保險의 約款에서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⁶⁵⁾에도 普通保險約款이 規範으로서 保險契約上의 法源이라고 보는 입장⁽⁶⁶⁾에서 볼 때에 法規範의 效力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요컨대 責任保險契約에서의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은 責任保險의 被害者保護機能을 강화하여 法律이나 約款에 의하여 인정한 경우에 허용되는 特殊한 權利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被害者の 直接請求權과 保險者の 抗辯權 保險者에 대한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은 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獨립된 權利라 하더라도 그것은 責任保險契約에 의한 被保險者の 權利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被害者の 保險者에 대한 請求權은 保險者와 加害者와의 사이에서 맺어진 契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그 契約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은 法律에 의하여 加害者が 責任을 지게 되는 事故에 의하여 생긴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權利를 기초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다.⁽⁶⁷⁾ 따라서 保險者は 保險期間 중에 생긴 일정한 事故로 被保險者が 法律上 賠償責任을 지게 된 경우 保險金額의 限度에서 補償責任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被害者は 加害者인 被保險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전제로 保險者の 責任限度額의 범위에서 직접 保險金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保險者は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대한 抗辯事由로써 被害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保險者の 責任이 被保險者에 대한 것보다 被害者에 대한 것이 클 수는 없기 때문이다.⁽⁶⁸⁾ 그러나 被害者の 보호를 第一義的으로 하는 義務的責任保險에 있어서는 保險者の 抗辯權을 制限하여 被害者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自賠責保險에서 被保險者の 故意로 인한 事故은 保險者の 免責事由로 하지 아니한 것도 被害者保護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保險契約法 제158조 c 1항은 「保險者が 保險契約者에 대한 紿與義務의 전부 또는 일부가 免除된 경우에도 第3者에 대한 관계에서 그義務는 존속한다」라고 규정하여 第3者的 滿足을 폐하고 있고,⁽⁶⁹⁾ 또 앞에서 본 義務保險法 제3조 2호에서와 같이 保險者를 保險契約者의 連帶債務者로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保險者は 保險契約者에 대한 抗辯事由로써 被害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것이다.⁽⁷⁰⁾ 이와 같이 義務的責任保險의 경우에 保險者の 抗辯權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바로 被害者保護의 기능을 강화하여 被害者에 대한 損害賠償의

(65) 自動車綜合保險約款 5조, 27조 2항 참조.

(66) 鄭熙喆, 전개서, 36면.

(67) 倉澤康一郎, 保險契約法の現代的課題, 16면, 1939. 3. 28. 프랑스破毀院民事部判決.

(68) 本稿 註 37 참조.

(69) Prölss-Martin, S. 732 Anm. 2.

(70) Ibid., S. 765f.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強制責任保險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立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 被害者の直接請求権의 消滅時效 商法 제662조는 「保險金額의 請求權은 2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라고 규정하여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을 2年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被害者が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金請求權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加害者(被保險者)의 不法行爲責任을 周인으로 하는 것이고,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은 消滅時效期間이 3年이다(民766조). 그리고 任置物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하여 생긴 仓库業者的 責任은 그 物件을 出庫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商166조). 이처럼 被害者の 加害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과 被保險者の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被害者の 保險金請求權도 被保險者の 그것과 똑같이 풀이할 것이나가 문제된다. 그러나 商法 제725조의 物件保管者の 責任保險의 경우에는 그것을 달리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自賠法 제16조와 產災保險法 제30조는 保險者에 대한 被害者の 請求權의 時效期間을 2年으로 하여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原子力損害賠償法과 같이 被害者の 請求權에 대한 時效期間을 정하고 있지 않는 強制責任保險의 경우 어떻게 이를 적용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독일의 義務責任法 제3조3호는 「第1號에 의한 第3者의 請求權은 賠償義務있는 保險契約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와 동일한 消滅時效에 걸린다. 消滅時效는 賠償義務있는 保險契約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의 消滅時效가 開始하는 時點에서 시작한다.」⁽⁷²⁾라고 규정하여 被害者の 保險金請求權은 加害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과 그 時效期間을 일치시키고 있는데, 特別法에서 그 請求權에 대한 時效期間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責任保險의 경우에는 民法의 一般原則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풀이한다. 나만 立法論으로는 保險關係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被害者の 直接請求權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消滅時效期間을 2年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四. 맷 는 말

責任保險은 產業災害에 따른 使用者の 責任이 업적해집에 따라 使用者賠償責任保險에서부터 출발하여 각종 분야에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責任保險契約은 오늘날의 經濟社會에 있어서는 단순한 損害保險으로서 被保險者の 損害補償에만 그 主眼點이 있는 것이 아니라 被保險者の 權利를 보호하여 第3者에 대한 賠償責任關係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신의 經濟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加害者が 충분한 資力を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被害者에게 현실적인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被害者の 이익도

(71) 徐燉珪, 전계論文, 176면.

(72) Prölss-Martin, S. 767f.

보호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社會에 있어서도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종의 社會的 危險에 대비하여 危險分散의 기능을 살리는 責任保險의 效用度는 나날이 증대하여 갈 것이고, 특히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는 각종 危險物取扱者에게까지 그 責任保險의 加入을 강제하는 強制責任保險의 영역이 넓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責任保險契約은 被保險者를 위한 保險으로서 被害者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被害者의 보호기능이 강조되고, 責任保險契約의 종국적인 이익은 被害者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 責任保險關係法의 현상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法制에서는 任意責任保險에서는 保險者는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하기 전에 그 被害者가 賠償을 받은 것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商724조1항), 또 強制責任保險에서는 保險者에 대한 被害者의 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든 責任保險의 영역에서 被害者의 直接請求權과 優先辨濟權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責任保險의 被害者保險機能을 더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責任保險은 被害者가 받을 損害額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不法行爲債務者가 責任保險에 들었을 때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損害賠償額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⁷³⁾ 왜냐하면, 加害者에게 그 賠償責任을 무겁게 한다 하더라도 그 責任을 지는 者는 加害者の 責任保險者라는 데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被害者の 이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保險契約의 團體性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保險制度는 大數의 法則에 의하여 危險率에 따른 保險金給與를 고려하여 保險料額이 算定되는데, 被害者에게 충분한 補償을 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責任保險 때문에 加害者の 부담을 높이면 높일수록 保險者는 保險契約者の 保險料負擔을 높일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責任保險의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責任保險의 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被害者の 보호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被保險者와 被害者の 이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保險者の 責任限度額의 설정, 保險金支給에 따른 紛爭의 調整 등을 통해서 그 責任關係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被保險者와 被害者の 이익조화를 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3) Möller u.a. S.32. BGH 6. VII. 1955 BGHZ Bd. 18, S.149.